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3

발의연월일: 2021. 2. 16.

발 의 자:김병욱 • 민병덕 • 민형배

서동용・송재호・안규백

양향자 • 이용빈 • 정성호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 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행법상 '강요된 필수동의' 관행 및 '가명정보 이용 동의 목적 외사용'시 연구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제재 및 처벌 조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 위반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생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 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 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제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 형벌 규정은 하향해 기업의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확보함.

주요내용

- 가. '강요된 필수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함(안 제15조, 제17조 및 제39조의3).
- 나. 적용의 일부 제외 사유 중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항목을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로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58조).
- 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제22조의

2).

- 라.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3조, 제30조 및 제75조).
-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 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2).
- 바. 과징금의 부과를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 조의15, 제64조의2).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수집, 이용, 제공"을 "처리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집·이용"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을 "그"로, "이용할"을 "개인정보를 처리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가피하게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명백히 정보주체"를 "정보주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명백하게 정보주체의"를 "정보주체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집·이용"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하려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 및 이용"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할"을 "이용 또는 제공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및 그 제공받

는 자의 처리 목적과 처리 기간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근거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5조제1항에"로,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를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명백히 정보주체"를 "정보주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해당 사항의"로, "하나의사항을"을 "하나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8호 및 제9호에"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제1호에"를 "제15조제1항제1호에"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로, "수집하여"를 "제공받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달성 등"을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6항에"를 "제22조의2제1항에"로, "각각 동의를"을 "동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를 "선택적으로"로, "제4항"을 "제1항제2호"로, "제18조제2항제1호에"를 "제6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를 "방법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7.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동의 확인방법과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에 의하여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을 "각"으로 한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을 "제38조까지,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 제39조의10, 제39조의12, 제59조 및 제64조의2를"로 한다.

- ⑦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의12를 적용한다.
- 제28조의3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승인 기준·절차 등"을 "승인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등"으로 한 다.
 -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다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제2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반출한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 등"을 "자, 가명정보의처리 기간 등"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이후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6을 삭제한다.

제2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1조, 제27조"를 "제27조"로, "제39조의3, 제39조의4"를 "제39조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 제28조의7제1항은 제28조의2 또는 제2

8조의3에 따라 처리되는 가명정보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① 보호위원회는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개 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 자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3. 자율규제단체 및 연합회
 - ② 보호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청구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호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및 심사의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공자"를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17조제1항에"를 "제15조제1항에"로, "이용자"를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9조의8제1항 본문 중 "제23조, 제39조의3"을 "제15조, 제23조"로, "제17조에"를 "제15조에"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 본문 중 "제17조제3항에도"를 "제15조제5항에도"로 한다.

제39조의15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3. 그 밖에 중대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실태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 정보처리자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를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26조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7.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 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9.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10.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의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정도 및 안전 성 확보 조치 등 의무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 6. 피해의 회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 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7년"으로, "1억원"을 "7천만원" 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으로, "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항을 위반하거나"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중 "제28조의3"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28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목적으로 가명정보를"을 "가명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 중 "제28조의5제1항"을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4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리 또는 부정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다른"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으로 한다.

- 2의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 보를 수집한 자
- 3.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 리한 자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2년"으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5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목적과 다른"을 "목적과다르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59조제1호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을 "개인정보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1년"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 한다.

- 1.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9조의14에"를 "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제24조의2제1항"을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3항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28조의5제2항"을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 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5조제3 항"을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 호의3 중 "제39조의14에"를 "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4 중 "제39조의4제3항"을 "제39조의4제3항(제26조제8 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5·제12호의6 및 제12호의7 중 "제39조의14에"를 각각 "제 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8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9 및 제12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보관한 자"를 "보관한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3항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을 "규정(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항" 을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8조의4제2항"을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항"을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4의2.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2의9.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2의10.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7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 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개인정보의 <u>수집, 이용, 제</u>	제1절 개인정보의 <u>처리 원칙</u> 등
고	
제15조(개인정보의 <u>수집·이용</u>) ①	제15조(개인정보의 <u>처리</u>)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u>으며 그 수집</u> 목적의 범위에서	<u></u>
<u>이용할</u>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4
및 이행을 위하여 <u>불가피하게</u>	<u>필요한</u>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5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u>명백히 정보주체</u> 또	<u>정보주체</u>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6
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명백하게 정보주체</u>	<u>정보주체의</u>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 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u>수집하려는</u>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u>보유 및 이용</u> 기 간

<신 설>

4.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 ③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u> </u>
·
· 1처리
<u></u> 2. 처리하려는
3처리
<u> </u>
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및 그
제공받는 자의 처리 목적과
처리 기간
<u> </u>
<u>5.</u> (28 / 14字子 毛百)

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이용 또는 제공할-----.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 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근거를 제30조제2항에 따 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 <삭 제>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소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
 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
 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 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 제공 제한) ①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u>제3</u> 2	<u> </u>	
2			
<u>다만,</u>	제5호부터	제9호끼	<u> </u> 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u>한다.</u>			

1. • 2. (생략)

<신 설>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9. (생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u>하나의 사항을</u>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

1. · 2. (현행과 같음) 3
<u>정보주체</u>
4. ~ 9. (현행과 같음)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③
제15조제2항
<u>해당</u>
<u>사항의하나를</u>
<u>.</u>
<u><삭 제></u>
<삭 제>
<삭 제>

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 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 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 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 여야 한다.

⑤ (생 략)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 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

<삭 제>

4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에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2) -----

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 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 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u>달성 등</u>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 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2 2 2
<u>제15</u> 조제1항제1호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
<u> </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u>달성, 가</u>
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세44조(중커글 린근 방법)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u>각각</u>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_
<u>제2</u> 2	2조의2기	제1항	<u>-에</u>			_
						_
						_
						_
						_
						_
<u>동의를</u>			<u>다</u>	<u>ı</u> },	다음	ī
각 호의	경우이	ll는	동의	<u> </u>	항을) <u>!</u>
구분하여	각각	동의	를	받	0}0	<u> </u>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 의를 받는 경우
- 2.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 의를 받는 경우
- 3.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 의를 받는 경우
-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 의를 받는 경우
- 6.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7.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

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
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
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
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
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u>기 위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u>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수집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u>제6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u>방법 및</u>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선택적으로</u>
<u>제1항제2호</u>
제6호에
<u><삭 제></u>

⑦제5항까지에서
<u>방법에</u>

<신 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 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 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 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 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동의 확인방법과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 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생략)
- ② (생략)

<신 설>

1	
<u>각</u>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공기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에 의하여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전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 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저 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생략)

<u><신 설></u>

①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u>제38조</u> 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한) ①		
1		
<u> </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를 개숙	인정
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수탁자는 위탁자의	기 동의	기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호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세3기	<u> </u>
게 재위탁할 수 있다.		
<u>®</u>		
	<u>제3</u>	8조
까지, 제39조의4부터	제39조	.의8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까지. 제39조의10. 제39조의12. 제59조 및 제64조의2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5 조제5항 및 제39조의12를 적용 하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 결 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해 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제2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고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 를 반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반출한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 항에 따른 반출 및 <u>승인 기준·</u>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 저 조치의무 등) ① (생 략) <u><신 설></u>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u>된다.</u>
⑤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
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u>.</u>
<u>6</u>
군·절차, 제5항에 따른 관리·감
독 등
¶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처
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
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u>수 있다.</u>
3
<u> </u>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 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 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8조의7(적용범위) ① -----

	- <u>자,</u> 가명	경정보
<u>의 처리 기간 등</u>		
	· <u>작성ㅎ</u>	- 이 아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이후
<u> 3년 이상</u>		
<u><삭 제></u>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 3의2. (생 략) <u><신 설></u>

4. (생 략) <u><신 설></u>

제39조의4
②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
제28조의7제1항은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되
는 가명정보에 대하여만 적용
<u>한다.</u>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
립 및 공개) ①
·
<u>.</u>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
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5.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① 보호위원회는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위원
 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3. 자율규제단체 및 연합회
- ② 보호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청구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호위원회에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및 심사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 도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 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삭 제>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 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

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하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 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 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 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 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 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 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 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 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 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 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 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제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u>제</u>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u>제공자(「정보</u>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제15조
제1항에이용자(「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u>利1</u>
5조, 제23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 의 보호) ① (생 략)
 -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 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 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15조에
19 2 4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
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一 工工/ ① (① 8 一 百 一
② 제15조제5항에도
<u> </u>
<u>.</u>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
 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 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나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 7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 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 는 개인정보

4. (생략)

② ~ ④ (생 략)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② (생략)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 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 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 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	
1.•2. (현행과 같음)	
<산 제>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 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 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 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 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 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 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 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 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 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 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 l 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 | <삭 제> 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 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 (9) (생 략) <신 설>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 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 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 3. 그 밖에 중대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 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 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 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 지 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1. ~ 3. (생략)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
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u>보호위원</u>
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
<u>.</u>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u>수 있다.</u> ③·④ (생 략) <u><신 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 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 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제26 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

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 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 집한 경우
- 4.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한 경우(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26조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7.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

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9.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10.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의 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정도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 6. 피해의 회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및 규모

-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0년</u> 이하의 장역 또는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히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70조(벌칙)
<u>7년</u>
<u>7천만원</u>
1.•2. (현행과 같음)
]71조(벌칙)
<u>3년</u>
<u>3천만원</u>

<삭 제>

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신 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 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

- 2의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 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4 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3.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3. <u>제28조의5제1항</u>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 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 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4의2. <u>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u>
을 목적으로 제28조의3(제26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u> 우를 포함한다)</u>
<u>가명정보를</u>
4의3. <u>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u>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 포함한다)</u>
<u><삭 제></u>

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 | <삭 제>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 | <삭 제>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 <u>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u>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 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를 수집한 자

-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 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 <u>른</u>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u>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u>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으로 다른-----

Э				
			<u>ス</u> トフ]	또는
	제3자의	이익을		
6				<u>자</u>

- 69 -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 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 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3.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72조(벌칙)
<u>2년</u>
2천만원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목적과 다르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2. <u>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u>
목적으로 제59조제1호를
<u>개인정보를</u>
3. (현행과 같음)
세73조(벌칙)
<u>1년</u>
<u>1천만원</u>

-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 <삭 제>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 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 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5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1.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 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 를 제출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 2.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 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삭 제>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u>제25조제2항</u>을 위반하여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u>자</u>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u><삭 제></u>
<u><삭 제></u>
3. <u>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u>삭 제></u>
2
<u>자(제26</u> <u>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u>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u>자(제26조제8항에 따라</u>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u>제39</u> <u>조의14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u>제24조의2제3항</u>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6.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u>체26</u>
<u>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u>
4의2.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
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
<u>한 자</u>
4의3.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 포함한다)</u>
4의4.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C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 자
- 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 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7의3. (생략)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 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 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 자

		자(저]26조	.제8호	항 어
따라	군용되	는 7	청우틑	- 王	함힌
<u>다)</u>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 7.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 7의2.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3. (현행과 같음)

- 8.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9.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10.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1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12. <u>제37조제4항</u>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의3. 제39조의4제1항(<u>제39조</u>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 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 한 자
- 12의4. <u>제39조의4제3항</u>을 위반 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제2항(<u>제39조</u> <u>의14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 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

12. <u>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삭 제>
<u> </u>
12의3 <u>제26조</u>
제8항 및 제39조의14에
12의4. 제39조의4제3항(제26조
제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12의5 <u>제26조</u>
제8항 및 제39조의14에
12의6 <u>제26조</u>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u>자</u>

<신 설>

<신 설>

제8항 및 제39조의14에
12의7 <u>제</u>
<u>26조제8항 및 제39조의14에</u>
12의8
자(제26조제
8항 및 제39조의14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의9. 제63조제1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의10. 제63조제2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 13. <u>제64조제1항</u>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처리위탁·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21조제3항</u>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 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u>규정</u>을 위반하여 동의를받은 자

<u>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13. <u>제64조제1항(제26조제8항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③
1.•2. (현행과 같음)
3
보관한 자(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 · · · · · · · · · · · · · · · · · ·
4
1.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규정(제26조제8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한 자
- 4. 5. (생략)
- 6. 제27조제1항 또는 <u>제2항</u>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2. <u>제28조의4제2항</u>을 위반하 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 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u>제2항</u>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u>제31조제1항</u>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u>자</u>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삭 제>
4.·5. (현행과 같음)
6 <u>제2항(제2</u>
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u> 우를 포함한다)</u>
6의2. <u>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u>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 포함한다)</u>
7제2항(제2
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u> 우를 포함한다)</u>
8.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
9
<u>자(제26조제8항에 따라</u>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삭 제></u>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 <삭 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 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 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 <삭 제> 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 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없다.

(5)						- —
						- –
				보호	위원	원
회기	<u>}</u>					
		<후단	삭제)	>		